

질의 서면 답변서

소 속	평 창 군 의 회	질의위원	이 경 진 위 원
답 변 자	평 창 군 수 (재무과장)	답변시한	질의: 2001. 12. 10 답변: 2001. 12. 12

《질의요지》

강원도내 시군별 엽연초에 대한 농지세 부과 여부

《답 변》

1. 시군별 농지세 및 엽연초 부과 현황 : 별첨
2. 농업소득세 해설 : 별첨

시군별 농지세 및 엽연초 부과 현황

시·군	엽연초수매처	2000 엽연초수매현황	엽연초 농지세 부과여부	2001 농지세부과액 (타작물 포함)
춘천시	홍천엽연초생산협동조합	56명 1,242,685천원	○	5,078천원
원주시	원주엽연초생산협동조합	351명 8,221,059천원	○	10,854천원
강릉시	영월엽연초생산협동조합	29명 415,360천원	×	4,774천원
동해시	영월엽연초생산협동조합	22명 319,216천원	×	
태백시		수매실적없음		
속초시		"		
삼척시		"		4,000천원
홍천군	홍천엽연초생산협동조합	199명 4,058,183천원	○	17,000천원
횡성군	홍천엽연초생산협동조합	166명 3,385,101천원	○	9,329천원
영월군	영월엽연초생산협동조합	241명 5,437,366천원	○	10,140천원
평창군	영월엽연초생산협동조합	68명 1,383,448천원	○	3,453천원
정선군	영월엽연초생산협동조합	10명 220,213천원	○	2,000천원
철원군		수매실적없음		118,112천원
화천군	홍천엽연초생산협동조합	4명 220,441천원	○	1,936천원
양구군		수매실적없음		
인제군		"		
고성군		"		
양양군		"		

농업소득세 해설

□ 농업소득세는 어떤 세금인가요?

- 농업소득세는 농작물을 재배하여 얻는 농업소득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으로 종래의 농지세가 농업소득세로 명칭변경된 것임(200.12.29 전면개정)
- 종전에는 농지에서 작물을 재배하여 소득은 지방세로서 지방자치단체에 부과하고
 - 온상 등 시설물에서 분재, 버섯, 콩나물 등을 재배하여 얻는 소득은 국세(종합소득세)로서 국세청(세무서)에서 부과하여
 - 동일한 농업소득이라도 재배방식에 따라 과세권자, 신고납부 장소, 세율 등이 다른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한 것임

□ 과세대상 및 세금부담이 늘었나요?

- 농지세에서 농업소득세로 개정하면서 종래 과세대상이 아니던 것이 새로이 과세대상이 된 것은 없고
 - 국가에서 부과하던 일부 농업소득의 과세권만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여 세금부담은 늘어난 것이 없음
 - 기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던 농민의 경우 지방세법의 농업소득세율이 소득세법상의 소득세율보다 낮고, 농업 외 소득과 합산하여 세액을 산출하지 않음으로서 오히려 세액부담이 감소함

□ 언제, 어떻게 납부하나요?

- 매년 5.31까지 전년도에 발생한 농업소득을 작물재배지(농지 또는 시설물 소재지)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소득금액에 따른 세액을 은행에 납부하여야 함
- 농업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납부하지 않거나, 과소한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부과함(납부기간 7.16~7.31)
- ※ 2001년도에는 1.31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3.16~3.31까지 납기로 하여 직권 부과 함

□ 과세표준액 및 세액 확정

- 소득금액은 작물별 각각의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납세의무자별로 합산한 금액임

$$\text{소득금액} = \text{작물별 소득금액의 합산} = \sum(\text{작물별수입금액} - \text{작물별필요경비})$$

- 과세표준액은 소득금액에서 기초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임

$$\text{농업소득세 과세표준} = \text{농업소득금액} - \text{기초공제}$$

- 기초공제는 세액공제가 아닌 과세표준 세출단계에서의 소득금액공제이며 기초공제액은 560만원 임

< 주 의 >

다년생 작물을 재배하여 수확하는 경우라도 기초공제는 1회만 함

- 수시부과시 기초공제액 계산

- 납세의무자가 사망하거나 출국함에 따라 수시부과하는 경우
- 월할계산액 = 560만원 × 월수/12(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)

- 세액산출 = 과세표준 × 세율

- ※ 농업소득세의 세율은 초과누진세율로서 최저세율 3%에서 최고세율 50%까지의 5단계로 구분하고 있음

과 세 표 준	세 율
400만원이하	과세표준의 100분의 3
400만원초과 1,000만원이하	12만원+ 4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10
1,000만원초과 4,000만원이하	72만원+ 1,000만원 초과금액의100분의20
4,000만원초과 8,000만원이하	672만원+ 4,000만원 초과금액의100분의3
8,000만원초과	1,872만원+ 8,000만원 초과금액의100분의40

- 예시 - 담배판매수입액이 2,400만원이 경우

$$2,400\text{백만원} \times 0.31(\text{소득율}) - 560\text{만원}(\text{기초공제}) = 184\text{만원}(\text{과세표준})$$

$$184\text{만원} \times 3/100 = 55,200\text{원}$$